2021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0. 10. 12.(월)
문화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0. 9. 28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 제출

다. 회부일자 : 2020. 9. 28.

라. 상정일자 : 제26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20. 10. 12.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성용원 복지국장

○ 검토보고 : 유한경 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인천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하여「지방재정법」제18조에 의거 사전에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❍ 출 연 금 : 2,145,407천원

❍ 출연방식 : 현금출연

○ 출연기관 : 인천복지재단

○ 관련근거 :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○ 동의(승인) 내용

-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현금 출연 : 2,145,407천원

3.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2021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[1]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「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2021년도에 출연(21억 4,540만 7천원)하기 위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.

○ '출연금'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출연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'보조금'[2]과는 차이가 있음.

---

1) **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5.28.>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4.5.28.>
③ **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** <개정 2014.5.28.>

2) **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**"보조금"이란**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(「국가재정법」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·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)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(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), 부담금(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),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2. ~ 8. 생략

○ 인천복지재단[3]은 2018. 4. 18. 보건복지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으며, 조직은 정책연구실, 지역복지실, 기획조정실, 운영지원실로 구성되어 있으며,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수탁업무로 추진하고 있음.

인력현황은 대표이사 1명을 포함, 정원 20명(연구직 5명, 사무직 15명)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.

※ 인천복지재단 확대·개편을 통한「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」설립에 따라, 재단명칭 및 조직 변경('20.11월)

* **(재단명칭)** 인천복지재단 →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
* **(조직구성)** 복지정책본부(기존, 인천복지재단), 사회서비스본부(신설, 사회서비스 기능)
* **(예산과목)** 복지정책본부(출연금), 사회서비스본부(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)

○ 복지재단의 주요사업은 사회보장 발전 중·장기 계획 수립, 복지분야에 대한 정책개발 및 조사·연구,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한 서비스 품질관리 및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고, 금년 11월에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·개편됨.

○ 인천복지재단의 연도별 출연금 규모를 보면,

[표] 인천복지재단 연도별 예산 및 출연금 내역

(단위:천원)

구분	예산액	인건비	기본경비	자산취득비	연구사업비 등	성과금	예비비	*출연금
2019년	2,250,000	861,712	359,788	50,800	972,700	0	5,000	1,900,000
2020년	2,350,269	1,315,351	195,686	0	728,080	61,152	50,000	1,959,352
2021년	2,465,407	1,411,674	281,295	0	701,286	61,152	10,000	2,145,407

3) 인천복지재단
- 허가일자 : 2018. 4. 18.(보건복지부 승인)
- 기본재산 : 7억원
- 설립근거 : 「민법」 제32조,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(공익법인법)」 제4조, 제5조

- 2019년도 19억원, 2020년도는 19억 5,935만 2천원('19년 대비 3.1% 증가)을 출연하여 인천복지재단의 재원 중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(83.4%)이 절대적이며, 2021년도는 21억 4,540만 7천원('20년 대비 9.5% 증가)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해당사항 없음.

5. 토론요지

○ 해당사항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7명 찬성 7명)

- 재석위원 : 김성준, 이용선, 조선희, 김준식, 박인동, 이병래, 전재운 위원

7. 기타

○ 해당사항 없음.

붙 임 2021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1부.

2021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929

제출연월일 : 2020. 9. .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○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인천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하여「지방재정법」제18조에 의거 사전에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.]

2. 주요내용

○ 출 연 금 : 2,145,407천원

○ 출연방식 : 현금출연

○ 출연기관 : 인천복지재단

3. 동의(승인) 사항

○ 관련근거 :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○ 동의(승인) 내용

-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현금 출연 : 2,145,407천원

4. 참고사항

○ 2021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계획

○ 2021년도 인천복지재단 세입·세출 추계

○ 인천복지재단 출연 관련 법령.

참고사항 ①	2021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계획

사 업 명	인천복지재단, 출연금	구분	출자	-
주관부서	복지정책과		출연	2,145,407천원

□ 출연대상 : 재단법인 인천복지재단 (이사장 : 최장혁)

○ 설립일자 : 2018. 4. 24.
○ 설립근거 :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○ 위 치 :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229, 17층(도화동, IT타워)
○ 기 구 : 4실
○ 인 원 : 정원 20명, 파견 공무원 3명 별도
○ 임원구성 : 16명(당연직 이사 2명, 선임직 이사 12명, 감사 2명)

□ 출연배경

○ 인천광역시의 사회복지정책을 연구·개발하고, 시민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증진 및 민간복지 활성화 지원·육성에 기여하고자 함.

□ 출연근거

○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(재정지원)
○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(재정지원)

□ 주요사업

○ 사회보장 발전 중·장기 계획 수립 지원
○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개발 및 조사·연구
○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·연구
○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한 서비스 품질관리·컨설팅
○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관리·컨설팅을 위한 평가·인증 지표 개발
○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 개발·보급 및 교육·컨설팅
○ 사회복지 연구기관 및 민·관 기관과의 조사·연구·교육 프로그램 개발
○ 국내·외 복지자원 연계·교류 및 협력지원 등

□ 출연규모 산출

○ 출연금액 : 2,145,407천원('21년도 예산안)

○ 출연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	'18년	'19년	'20년	'21년	비고
출연금	1,810,239	1,900,000	1,959,352	2,145,407	

※ 인천복지재단 확대개편을 통한「인천시 사회서비스원」 설립에 따라, 재단명칭 및 조직 변경('20.11월)

* **(재단명칭)** 인천복지재단 → 인천시 사회서비스원
* **(조직구성)** 복지정책본부(기존, 인천복지재단), 사회서비스본부(신설, 사회서비스 기능)
* **(예산과목)** 복지정책본부(출연금), 사회서비스본부(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)

□ 기대효과

○ 인천 복지정책 연구·개발 및 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증진

○ 민간 복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·육성

참고사항 ②	2021년도 인천복지재단 세입·세출 추계

☐ 2021년도 세입예산(안)

(단위 : 천원)

관·항·세항·목	'21년 예산 (A)	'20년 예산 (B)	증감	
			(A-B)	(%)
사 업 수 익	2,465,407	2,350,269	115,138	4.9
영 업 외 수 익	2,161,007	1,976,050	184,955	9.4
이 자 수 익	15,000	15,300	△300	△2.0
예 금 이 자 수 익	15,000	15,300	△300	△2.0
기 타 영 업 외 수 익	600	1,400	△800	△57.0
기타영업외수익	600	1,400	△800	△57.0
출 자 출 연 금 수 익	2,145,407	1,959,352	186,055	9.5
지자체출자출연금	2,145,407	1,959,352	186,055	9.5
자 본 적 수 입	304,400	374,217	△69,817	△18.7
자 본 잉 여 금 수 입	304,400	374,217	△69,817	△18.7
잉 여 금	304,400	374,217	△69,817	△18.7
순 세 계 잉 여 금				

☐ 2021년도 세출예산(안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'21 년 예산 (A)	'20 년 예산 (B)	증감	
			(A-B)	(%)
사 업 비 용	2,465,407	2,350,269	115,138	4.9
영 업 비 용	2,455,407	2,300,269	155,138	6.7
매 출 원 가	1,377,248	1,325,019	52,229	3.9
인 건 비	781,650	710,655	70,995	10.0
경 비	595,598	614,364	△18,766	△3.1
판매비와 일반관리비	1,017,007	914,098	102,909	11.3
인 건 비	630,024	604,696	25,328	4.1
경 비	386,983	309,402	77,581	25.0
성 과 급	61,152	61,152	-	0
성 과 급	61,152	61,152	-	0
예 비 비	10,000	50,000	△40,000	△80.0
예 비 비	10,000	50,000	△40,000	△80.0

참고사항 ③	인천복지재단 출연 관련 법령

▢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▢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20조(재정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.

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▢ 「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6조(재정지원) 시장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